

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9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2. 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노인의 사회 활동 및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 한 바, 노인의 건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속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실버악단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시장이 운영함.(안 제2조)
- 나. 악단은 단장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성.(안 제3조)
- 다. 단원은 만60세 이상 안산시민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되 필요시 연령제한 배제 및 특별채용 가능(안 제5조)
- 라. 연 1회 정기공연 및 매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함.
(안 제10조)
- 마.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1조)

□ 조 례 안 : 불 입

□ **관계법령발췌서 : 불 임**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제1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5호

□ **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**

□ **예산수반사항 : 69,200천원**

- 산출 기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기초	비 고
합 계	69,200		
행사실비 보상금 [소 계]	10,000		
안산시실버약단 정기연주회	5,000	5,000,000원×1회	
안산시실버약단 전국대회 참가	5,000	5,000,000원×1회	
기타 보상금 [소 계]	39,200		
안산시실버약단지회자 보상	13,200	1,100,000원×12월	
안산시실버약단 강사 보상	8,400	700,000원×12월	
안산시실버약단운영비	9,600	800,000원×12월	
안산시실버약단의상비	6,000	300,000원×20명	
신규단원 심사위원 사례비	2,000	200,000원×2회×5명	
자산 취득비 [소 계]	20,000		
악기구입 등	20,000	20,000,000원×1석	

□ **사전예고**

- 입법예고 : 2009. 11. 30 ~ 2009. 12. 21(20일간)

□ **기타 참고사항 : 해당 없음**

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안산시 실버악단(이하 “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밝고 건전한 음악을 시민에게 확산·보급
2.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
3.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시민화합에 기여
4.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

제3조(구성) ① 악단은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과 비전속 단원(이하 “객원단원”이라 한다)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4조(사무의 구분) ① 시장은 악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.

② 단장은 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을 대표한다.

제5조(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) ① 단원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성인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② 단원은 공개전형은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. 다만,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③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,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. 다만, 면접은 실기 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④ 시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악단의 임원)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단원은 전형을 거쳐 선발·위촉한다.

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단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3.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
4.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,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경우
5.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
6. 그 밖에 악단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단장과 단원의 의무 등)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,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의 적극적 참여
2. 각종 연습 및 공연활동 준비에 적극적 참여
3. 그 밖에 안산시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행사 등의 적극적 참여

제10조(공연 활동) 악단의 공연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보상 및 지원) ①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악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강사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악단의 육성 등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설 등의 이용) 악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안산시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박 용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담당 김 용 선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은 (행정 3352)

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6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2. 26.
제안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 내 중복된 의미가 있는 문맥은 삭제하고 유사한 조항은 묶어 조례의 통일을 기함.

2. 주요 골자

- “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”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촉 사항만 규정함(안 제7조).
- 단원의 해촉 사유 중 제9조와 유사한 “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”를 삭제함(안 제8조).
- 안 제12조(악단의 육성 등), 안 제13조(시설 등의 이용)를 제12조 제1항, 제2항으로 구분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함.

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 “단원은 전형을 거쳐 선발·위촉한다”를 “단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의 5호 “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”를 삭제하고, 6호를 5호로 한다.

“제12조(악단의 육성 등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제12조(악단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악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안산시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3조는 삭제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<u>단원은 전형을 거쳐 선발·위촉 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8조 (단원의 해촉) (생략)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이유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2조(악단의 육성 등) <u>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3조(시설 등의 이용) <u>악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안산시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<u>단원은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②(원안과 같음)</p> <p>제8조 (단원의 해촉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~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(삭제)</p> <p>5. (원안 6.과 같음)</p> <p>제12조(악단의 지원 등)① <u>시장은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악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안산시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(삭제)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(제14조 원안과 같음)</p>